

# 2019년도 제26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 I. 회의 개요

- 일 시 : 2019. 3. 28.(목요일), 10:00
- 장 소 :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석자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1분과위원회 위원 3명 참석
  - 심의위원 : 최승수(분과위원장), 강호갑 위원, 정태호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19-20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분과위원

3. 안건상정 .....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성원영 전문위원

·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4. 폐회선언 ..... 분과위원장

## II. 회의내용 및 결과

### 1. 의결안건

-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907건(안전번호 제2019-4679호~5335호)
  - 회의결과: 불법복제물등에 해당되는 심의안건 게시물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그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기로 의결함

### Ⅲ. 회의 의사록

#### 1. 개회선언

- 최승수 분과위원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 제26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 2. 전차(제2019-20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최승수 분과위원장 : 전차 회의록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의견을 구함
- A 위원 위원 : 위원 이름만 비실명 처리하여 공개하면 될 것으로 보임
- B 위원 위원 : 이견 없음
- C 위원 위원 : 의견에 동의함
- 최승수 분과위원장 :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한 이상 없음을 확인하며 모두 공개하기로 결정함

#### 3. 안전상정

-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성원영 전문위원 : 금일 심의대상 안건은 안전번호 제2019-4679~5335호로 심의대상 게시물은 총 907건임  
안전번호 제2019-4679~4681호는 밴드 이용자가 최신 영화 저작물들을 이용자들에게 파일형태로 게시한 사안임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는 2018년 12월 국내 개봉하였고, '극한직업'은 2019년 1월 개봉하였으며, '클로즈'는 '넷플릭스'에서 2019년 1월 공개한 것으로 확인됨
- 최승수 분과위원장 : 전문위원의 안전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에게 안전번호 제2019-4679~4681호 밴드 이용자가 게시한 최신 영화의 영상 게시물에 대한 의견을 구함
- 성원영 전문위원 : (해당 밴드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보여주며)밴드 내에서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해시태그를 이용하고 있으며, 최근 개봉한 영화들이 게시되어 있음
- C 위원 위원 : 일반인이 신고할 때 심의대상 게시물 3건을 지정해서 신고한 것인지 밴드 전체를 신고한 것인지 질의함
- 성원영 전문위원 : 밴드 내에서 영화를 지속적으로 게시하는 이용자 2명이 있다고 신고하였고, 보호원에서 조사를 담당하는 온라인대응팀에서 해당 밴드를 조사하여 심의안건 게시물에 대한 심의를 요청함
- C 위원 위원 : 밴드 내 불법복제물을 조사하는 시점에 3개의 게시물만 있었는지 질의함

- 성원영 전문위원 : (해당 밴드에서 심의대상 게시물이 아닌 다른 게시물들을 보여주면서) 온라인대응팀에서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당시에 불법복제물이 더 있었을 가능성이 있음
- B 위원 : 일반인이 밴드 전체를 신고한 것이 맞는지 질의함
- 성원영 전문위원 : (민원 내용을 제시하면서)일반인이 밴드 전체를 신고한 것이 맞다고 답변함
- C 위원 : 최신 영화저작물이므로 당연히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 타당함  
민원인은 해당 밴드 전체를 신고했는데 3개의 게시물에 대해서만 시정권고를 하면 민원인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심의대상인 3개의 게시물에 대해서는 심의 의결하여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삭제요청하고 그 외 추가로 게시된 불법복제물에 대해서는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는 경고를 하는 것이 좋다는 견해를 밝힘
- 성원영 전문위원 : 심의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은 게시물에 대해서 경고의 시정권고를 해야 한다는 의미로 말씀한 것인지 질의함
- C 위원 : 맞다고 답변함
- 성원영 전문위원 : 저작권법에는 보호원이 요청한 안건에 대해 심의 위원회에서 심의를 의결하게 되어 있으므로, 온라인대응팀에 위원님 의견을 전달하여 해당 밴드에 대한 추가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음

- B 위원 : 심의대상 안전에 대해서 시정권고하는 것이 타당함
- C 위원 : 일반인이 익명으로 밴드를 신고한 것이 맞는지 질의함
- 성원영 전문위원 : (민원 내용을 제시하면서)그렇다고 답변함
- A 위원 : 밴드에 게시된 영화 불법복제물에 대해 시정권고를 하는데 이의 없음
- 최승수 분과위원장 :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19-4679호~4681호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 (심의대상 게시물을 보여주며)안전번호 제2019-4682호는 1시간이 넘는 일본 가수의 라이브 공연 영상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설정한 게시물임  
(서버 위치 정보를 보여주면서)해당 사이트의 서버는 국내에 있으며, 심의대상 게시물의 링크로 연결되는 영상물이 저장된 서버의 위치 또한 우리나라로 확인됨
- 최승수 분과위원장 : 전문위원의 안전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에게 안전번호 제2019-4682호 커뮤니티 사이트에 링크 설정된 영상 게시물에 대한 의견을 구함
- A 위원 : 콘서트 공연 영상을 링크 방식으로 공유하는 것으로 링크 설정 게시물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시정권고를 가결하고 있음

- 기존에 심의 의결했던 링크 설정 게시물과 구조가 다르지 않다고 사료됨
- B 위원 : 본 건과 유사한 해당 사이트의 다른 게시물에 관하여 과거 심의에서 시정권고 의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음
  - 성원영 전문위원 : 시정권고 의결되었으며, 곧 개최 예정인 다른 분과에도 심의안건으로 상정되어 있음  
동일한 민원인이 신고한 것으로 보임
  - B 위원 : 시정권고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상습적으로 불법복제물을 게시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 타당함
  - A 위원 : 시정권고를 하는데도 지속적으로 불법복제물을 게시하고 있는데, 삭제가 되더라도 물량공세를 하겠다는 생각인 것인지 우려스러움
  - 성원영 전문위원 : 동일인이 신고한 것으로 보이나 해당 사이트 특성상 게시자가 동일인인지 여부는 확인이 불가능함
  - C 위원 : 시정권고 하는 것이 타당함
  - A 위원 : 동의함
  - 최승수 분과위원장 : 안전번호 제2019-4682호는 만장일치로 시정을 권고하는 것으로 의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 안전번호 제2019-4683호는 콘솔용 게임프로그램을

PC 위원용으로 변환하여 블로그에 게시한 사안임

해당 게임의 데이터는 원래 게임기의 ROM 카트리지에서 추출된 것으로 게임회사가 저작권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게임을 게임 회사의 허락 없이 복제, 이용하여 ROM 파일을 제작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함

나아가 에뮬레이터(emulA 위원tor)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해당 게임프로그램에 대한 역분석 과정을 거치게 될 경우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가 수반될 가능성이 큼

- 최승수 분과위원장 : 전문위원의 안건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에게 안건 번호 제2019-4683호에 대한 의견을 구함
  
- A 위원 :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게시한 것으로 추정됨
  
- C 위원 : 콘솔용 게임을 PC 위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조한 것은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한 것으로 저작권 침해행위가 심각하다는 견해를 밝힘
  
- A 위원 : 콘솔용 게임으로 게임 실행을 콘솔에서 할 수 있도록 제작사에서 설정을 하였을 것인데, PC 위원용으로 변환했다면 기술적 보호조치를 해제하여 PC 위원용인 ROM파일로 개작하였을 것으로 보임  
저작권자가 설정한 디바이스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이용한 것으로 게임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가 분명하다고 사료됨
  
- A 위원 : 시정권고를 하는데 이의 없음
  
- C 위원 : 동의함



- B 위원 : 시정권고 하는 것이 마땅함
  
- 최승수 분과위원장 : 안전번호 제2019-4683호~4689호는 만장일치로 시정을 권고하는 것으로 의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보여주면서)안전번호 제2019-4690호~5335호는 웹하드 사이트를 통해 불법 복제 프로그램, 음악, 영상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는 사안임  
(인터넷 주소를 입력하여 특정 웹하드 게시물의 현재 상태를 보여주면서)검토보고서의 저작물명은 '위너원'이 실연한 '에너지틱'으로 되어 있지만, 해당 게시물에서 제공하는 압축파일에는 '위너원'이 실연한 다른 최신 곡들도 포함되어 있음  
(다른 게시물을 보여주면서)'멜론 TOP100 모음'처럼 최신 인기가요를 압축파일 형태로 웹하드에서 제공하는 경우가 많음
  
- 최승수 분과위원장 : 전문위원의 안전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에게 안전번호 제2019-4690호~5335호에 대한 의견을 구함
  
- A 위원 : 심의대상 안전 중 '화사의 명칭이'가 언제 발매된 것인지 질의함
  
- 성원영 전문위원 : 2019년 2월 13일에 발매되었음
  
- B 위원 : 시정권고를 하는데 이의 없음
  
- C 위원 : 동의함

- 최승수 분과위원장 : 안전번호 제2019-4690호~5335호는 만장일치로 모두 시정을 권고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19-4679~5335호 게시물에 대해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는 것으로 의결함”

#### 4. 폐회 선언

- o 최승수 분과위원장이 제26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19년 제26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19. 4. 4.

분과위원장 최승수

위원 강호갑

위원 정태호